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8. 6. 7.(목) 14:35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5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2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7년도 2~4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2018-27-345~355)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2017년도 2~4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우석 재난방송관리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우석 재난방송관리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4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 재난방송 실시 의무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를 <붙임 1>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방송 실시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이하 내용은 지난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라> 사업자별 위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자별 위반내역 보고에 앞서서 본 건이 지난번 회의에서 지역을 달리 하면서 연속적으로 내려진 호우경보의 경우와 같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수회 재난방송 요청에 대해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하나의 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즉 형사상 포괄일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복수의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아 보았고 검토결과, 재난방송 요청 매 건별로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자별 위반내역은 당초 원안대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별 위반내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조사대상 104건 중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재난방송 실시 사실을 소명한 MBC 등 11개 방송사 15건은 재난방송 실시를 인정하고, 기독교방송 등 라디오방송사에 자막방송을 요청한 8건은 “불명확한 재난방송요청”으로 재난방송 실시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불·화재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재난방송 요청을 위반하였다고 지적된 20건은 재난방송 실시기준이 재난방송 당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주의” 조치하고, MBC, SBS, YTN, 기독교방송 등 12개 방송사 25건은 ‘지역명 일부 누락, 인식 가능한 범위의 지역 포괄’ 등 재난방송 내용이 일부 미흡하지만 그 위반 수준이 미미하여 “주의” 조치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한편, MBC, SBS, 채널A,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원음방송, 경인방송, 국악방송, YTN라디오, 한국DMB 등 10개사 23건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사는 재난방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재난명 및 재난지역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재난방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외 재난방송을 미실시한 13건에 대해서도 재난방송 의무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방송사별

위반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한국방송공사 등 11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미실시 및 미흡실시 36건은 재난주관기관의 발표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방송으로서 재난방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에 따라 <붙임 2>의 위반내역에 대해 <붙임 1-1>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는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기준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1>을 보시면 방송사별 위반 건수당 과태료 기준금액인 1,500만원을 곱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붙임 1-2>에는 과태료 금액을 50% 감경한 내용을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개선 필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막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TV와 달리 라디오의 경우 음성으로 방송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방송 요청 문안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취자의 청취권도 고려하면서 재난정보 전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지역을 포괄적인 표현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편성 라디오 방송의 경우 재난방송 실시의무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과태료 부과(안)를 의결해 주시면 6월 중으로 과태료 부과통지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것은 우리가 5월 16일에 의결을 미뤄서 오늘 다시 하게 된 것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도 검토가 되어서 오늘 최종안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었으나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의 비구름대가 쪽 이동을 하면서 호우경보가 지역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발견됐습니다. 이것을 1건으로 보지 않고 하룻밤 사이라 하더라도 건건이 1,500만원씩 과태료를 매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어긴 날짜를 보니까 작년 7월 2일, 3일, 16일, 23일이 다 일요일 밤이거나 일요일 낮, 그다음에 월요일 새벽, 다시 말하면 일요일 근무자들이 거의 없이 녹음방송으로 진행되는 라디오 매체에 우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송사의 어려운 사정 취약매체이고 영세규모이고 그리고 라디오방송이라는 특수성, 또 매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건이 다 방송을 중단하고 중간에 끊고, '지금은 포천에서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1시간 뒤에 방송을 끊고 '이번에는 파주 쪽으로 호우경보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근무자가 있어야 되는데 일요일 밤이라는, 새벽이라는 이런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정상 참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러 재난방송 요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닙니다. 야간 근무자가 없다는 것, 영세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번 6월에 재난당국과 재난방송협의회가 있지요?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럴 때는 매체의 특성에 맞게끔 기준을 세세하게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서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0% 경감하는 안을 그나마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전문편성 라디오방송들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재난은 결코 공휴일을 비켜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휴일이라고 해서 재난이 스쳐가거나 비켜가는 것이 아니고 재난방송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그리고 재산 피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 것이 이번에 포괄일죄를 적용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건별로 제재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되, 방송사가 처한 현황을 이해한다는 측면과 지난번 과태료 처분 이후에 방송사들이 스스로 개선 노력하려고 했던 행위 그 사이에 발생했다는 점, 이 2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 방송사에게 50% 감면 처분을 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면서도 방송사에 경고를 주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재난 문자방송이 다 가고 있는데 라디오방송, 특히 국악방송이나 아니면 영어FM방송 같은 곳에서 계속적으로 특정 시기에 방송이 제대로 안 나갔다고 어떤 면에서 보면 과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 9월에 재난방송에 관해서 방송사업자들에게 처분을 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재난방송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정책목표는 거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는 2분의 1 감경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작년 9월에 1/4분기 재난방송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길 때 그

때도 50% 감경해 줬습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그때 50% 다 일률적으로 감경안을 적용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법률자문 결과에 의하면 포괄일죄 적용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고려할 때 지난번과 같이 전부 다 50% 감경하는 방안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안건은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 (2018-27-356)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딜라이브, (주)딜라이브서초케이블티브이 2개사 재허가에 대해 아래의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동의한다’입니다. 권고사항(안)은 <1> (주)딜라이브 및 (주)딜라이브서초케이블티브이는 시청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익·장애인복지채널을 저가 상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주)딜라이브 및 (주)딜라이브서초케이블티브이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딜라이브, 딜라이브서초케이블티브이 등 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사업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2018년 4월 23일부터 25일에 걸쳐 과기정통부 재허가 심사가 있었고, 5월 2일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에 재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5월 24일에 재허가 사전동의 약식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 결과 방송, 법률, 회계분야의 외부전문가 3인이 과기정통부의 심사의견서, 사업자 신청서 등을 검토한 결과, 과기정통부가 (주)딜라이브, (주)딜라이브서초케이블티브이에 부가한 <붙임 2>의 재허가 조건은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16년 11월부터 권고사항으로 부가된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접근권 향상,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확대를 권고사항으로 부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약식심사위의 의견제시 내용,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주)딜라이브, (주)딜라이브서초케이블티브이에 대해 의결주문과 같이 동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과기정통부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약식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사의견을 붙인 것이 있는데 서초지역의 영업이익률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지역채널 투자금액이 전년대비 약 14% 삭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역채널 투자가 미미한 점들은 심사위원들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시청자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영업행위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고민하는 모습들이 시청자위원들끼리 주고받은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회의록에서 드러났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보고 싶어서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풀어갈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역채널 투자 부분은 저희가 권고사항으로도 부가를 했지만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조건을 보면 지역채널에 대한 투자계획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쪽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채널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으로 부가된 사항이어서 아마 점진적으로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대개 지상파 같은 경우는 또는 종편 같은 경우는 몇 분기마다 언제까지 투자개선계획 이행 실적이나 이행계획을 우리에게 제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기정통부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자료를 낸다는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자료는 내는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서 자체에 매년 얼마의 지역채널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 이행실적은 누가 점검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매년마다 과기정통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시청자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과기정통부에서 부가한 재허가 조건을 보면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다양하게 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조건이 이행된다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저도 김석진 위원님과 같은 질문입니다. 약식심사위원회 심사의견들을 보면 주요 사항들 4가지를 언급했었고, 그것이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조건에 다 붙어 있긴 한데, 권고사항 2가지는 4가지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권고사항으로 부가된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공익채널이나 장애인복지채널의 저가 상품 편성 부분은 저희가 동일하게 기존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에서 부가했던 부분이고, 지역채널 투자 부분은 물론 사업계획서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너무 급격하게 지역채널 투자를 줄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환기 차원에서 저희도 권고사항을 같이 부가하는 것이 좀 더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부가하게 되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하라고 특별 권고를 더 강조한 측면이고, 앞부분도 공익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저가 상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율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 부분은 일단 사업자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 사업자에 대해서만 특이하게 구체적으로 붙이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다음번 재허가를 할 때, 다음번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구체적으로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 (2018-27-357)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의결안건 다>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2018년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관련 경과입니다. 2013년부터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사업자 11개사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한 이래 매년 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평가를 위해 지난 4월에서 5월간 전문가 자문 및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전기통신사업법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입니다. 평가목적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유도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처리를 위해 보다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평가 대상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불만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습니다. 2017년도 시범평가를 실시한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 4개사를 포함해서 6개 분야에 총 31개 사업자를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을 제외하면 사업자 기준으로는 총 25개사업입니다. 이용자 보호업무의 평가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간 전기통신업무와 이용자 보호 관련사항을 평가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평가기준입니다. 평가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하며,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5개 분야에 총 8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며, 총점은 1,000점입니다. 그리고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그 밖에 이용자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자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방법은 사업자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되, 사업장의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ARS 시스템 모니터링, 미스터리 쇼핑 방식의 대리점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전화조사 등 다각적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평가항목과 관련해서는 '피해 발생 시 보상절차 및 기준' '불법 TM 방지 노력'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이용자 피해예방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포털의 경우에는 온라인광고 관련, 불법정보 및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개선노력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앱마켓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 결제 관련 사항 등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관련 평가항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절차는 평가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총 16인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평가 위원회는 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사례 및 관련 정책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는 각 사업자별 평가 결과는 등급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평가 상세 결과는 평가 대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 최고득점 사업자에게는 위원장 표창을 부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30% 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 감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안내를 통해 이용자 보호업무의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올 11월까지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 12월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16년도에는 포털 4개사에 대한 평가가 시범으로 이루어졌는데 작년도 평가부터는 정식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이용자 수만 해도 네이버가 4,400만명이나 되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3,400만명으로 통계가 되어 있는데 포털에 대한 평가가 작년도부터 정식 평가를 받으니까 올해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포털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본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이 뒤늦은 감이 있고, 특히 앱마켓 같은 경우 올해 시범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작년에 시범평가하고 올해 본 평가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눈에 띄는 것은 구글이나 애플, 이런 소위 해외사업자들에 대한 평가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업무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평가하는 평가내용이 얼마나 경고를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나중에 과징금도 경감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도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외사업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여쭙습니다. 어떻습니까?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범평가를 실시했습니다만 자료를 그렇게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평가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을 실효성 있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예.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자료제출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용자에 대한 전화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심층면접 등 저희가 실제로 앱마켓의 앱에 가입해 보고 또 해지를 어떻게 하고 이런 형태로 포털이나 앱마켓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평가방법들도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에 더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앞으로 계속 이런 대상을 우리가 늘려가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을 찾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해 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3,000~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일단 업무평가를 하는 데 대해서 사업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따르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서 응하는지...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기간통신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객센터 쪽에서 “이 업무들을 준비하는데 이 계기로 한번 전반적인 자기들 업무현황도 점검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이 자체가 교육도 되고 어떤 지침서가 된다”는 의견들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포털 같은 경우 “이것이 기간통신사업자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지, 무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일부 제출하고 있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저희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해 오는데 지금 민원처리나 이용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평가가 있어서 CEO 등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평가단이 실제로 해당 회사를 방문해서 민원처리시스템 현장도 확인하고 실제로 업무보고를 받고 또 CEO 미팅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심도 제고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같은 경우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95점 이상 정도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가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점수가 아주 최우수나 우수인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하면 어떠냐, 이런 부분도 사업자와 이야기하면 사업자들은 “계속 일관성 있게 매년 해야 한다. 그래야 이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이 진행된다” 이런 의견까지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평가가 단순하게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사례를 서로 간에 공유하고 또 일부 과징금 부과 혜택이 있지만 이용자 보호업무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 규제 차원에서 좋은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그런 점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3,000~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서 민간 기업들이 이용자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일종의 서비스 점검 겸 컨설팅 정도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나 국외,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정도 편차가 있고 어떤 점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용자 보호를 하면서 동시에 사업자에 입장에서는 이용자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황 점검의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시행해 보고 내년, 내후년 되면 평가제도 시스템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부터 해 왔는데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전화 사업자 일부는 95점, 97점까지 나온다면 이것을 돈 들여서 계속 점검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나,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항목별로 서비스에 민원 실적이 많은 것은 분명히 엄정하게 점검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민원이 굉장히 많아지는 포털이나 앱마켓이나 이용자에게 불편이 훨씬 많은 쪽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제도의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평가의 특징을 보면 현장실사를 강화한다는 것, 그리고 분야별로 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아까 김석진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구글이나 애플 같은 해외 사업자의 고객의 소리, CS 최고책임자 면담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형평성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 인력풀을 벗어나서 이용자 보호에 실무적인 역량을 지닌 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중심이 아니라 그런 민원들을 정확하게 해결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위주로 평가단 풀을 구성했으면 합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아까 예산이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만 3,000만원이고, 실제 전화조사나 이런 예산까지 다 합하면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런 예산 들여서 나온 결과가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중 어디가 1위이고 어디가 2위라고 하는 사업자들의 홍보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평가로 이용자 보호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용자 보호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년까지는 시범평가를 단계적으로 했습니다. '16년에 포털, '17년에 앱마켓에 대한 시범평가를 했는데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 사업자에 대해서 별도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SNS는 단순히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지금은 커머스도 모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호텔, 관광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지난달 31일부터 직접 상품구매가 가능한 쇼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용자 불만, 이용자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이런 곳은 가입자가 많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이것은 아직 SNS 사업자의 경우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단일서비스이기 때문에 검토를 못 했는데 아까 부위원장님이나 김석진 위원님 의견 주신 것 포함해서 내년도부터 이용자 보호 평가 제도 개선을 말씀하셨으니까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은 단순히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뿐만 아니라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의 집행력 확보 방안, 실행력 확보 방안 차원에서 어차피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 국내 인터넷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까지 전후방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한꺼번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런 것들도 다 전기통신사업자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는데 이 평가 제도 자체가 최초에는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 위주로 평가가 되어 왔는데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도 모색하고 평가대상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오히려 지금 추세라면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들을 전부 다 포함시키고,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여기에서부터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삼석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 협조를 잘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게 하고, 여기에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하시고 기타 다른 또 규제업무도 더 철저하게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법이 미비해서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신 관련 규제업무 중 가장 핵심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하는 문제일 텐데 여기에서부터 벌써 중요한 것들이 빠져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자별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을 보면 포털과 앱마켓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포털 같은 경우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배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똑같이 1,000점 만점에서 다른 쪽의 비중을 높이긴 했지만 이것을 이렇게 적은 비중으로 처리해도 괜찮은지 의견을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최종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은 평가위원 전문가들 구성되면 다시 한 번 재조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포털 앱마켓과 제일 마지막 10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이용자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중에서 유료서비스 결제 분야에 가중치를 많이

되었습니다. 인앱(In-App) 결제 관련해서 환불 문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역점을 두고 처리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 포함해서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그 평가항목 중에는 저희가 대리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는지 이렇게 조사하는 항목이 이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앱이나 포털 같은 경우에 그 항목에 대한 점수 배점이 빠져서 그것을 다른 분야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점수를 넣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에 대한 평가 배점이 일부 거기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낮은 것이지, 이 분야에 대해서 평가 배점 자체를 작게 한 것은 아닙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혹시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작금의 방송 현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려서 논쟁도 계속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제가 꼭 필요한 논쟁이나 이 자리가 정쟁의 장이 되는 것은 지양하겠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오늘은 이런 논쟁 차원이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또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침 방송정책국장께서 자리에 앉으셨는데 고맙습니다. KBS 이사회가 이틀 전에 야권 추천이사들 퇴장 속에 여권 추천이사들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진실과 미래위원회’라고 부르는데 하는 일을 봤더니 지난 정권에서 방송된 여러 가지 불공정 사례, 또 공영방송 독립성 침해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격을 보면 예를 들어 소속 직원을 자체 징계하겠다고 하면 엄연히 감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징계요구라는 것이 법적인 자문을 받아봤더니 우리가 있다고 해서 징계 권고로 바꾸어서 그에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원에서 얼마 전에 ‘KBS가 이렇게 소속 직원을 징계 요구하는 것은 엄연히 감사업무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존 감사기구가 아닌 제2의 감사기구를 두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사 설치 직제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3조 중복감사

금지조항이 있는데 이것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또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현직 KBS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다는 겸직금지 조항 제13조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제15조, 제17조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에도 위반될 소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직원은 퇴직한 뒤에 2년 이상이 지나야만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명백히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특별위원회가 MBC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상화위원회처럼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방송보도를 조사해서 직원을 징계하고 처벌하고 해고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야권에서 계속 제기되고 KBS 공영노조, 또 KBS 이사회 야권 추천이사 공동성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도 성명을 낸 것을 봤는데, 그렇다면 KBS, MBC 공영방송 모두가 이념적인 잣대로 보도논조를 파헤치고 직원을 징계하는 이런 공포의 특위 활동이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방송,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논란은 한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과연 이 기구를 감사기구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논란이 정리되어야 이것이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고, 직접 우리가 KBS를 조사할 수 없는 노릇이고 이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면 아마도 우리가 감사원에서 유권해석이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가 혹시 감사원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 논란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혹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무 정책국장으로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희가 6월 5일 이사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내용만 가지고는 이것이 감사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일단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해서 운영과정이나 앞으로 위원회 활동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혹시 그때 가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감사원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단계로 이사회 통과된 안건 내용만 가지고 감사원에 이런 유권 해석을 하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고 혹시 감사원의 중복감사 금지조항들, 아까 쪽 제17조의3, 제13조 다 열거했지 않습니까? 혹시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것은 방송계 중요 움직임이니까 잘 파악하시고 다음에 보고하실 것이 있으면 보고하시고 질문하시면 답변하시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구성은 됐습니다만 아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나 KBS 내에 있는 공영노조가 지적했던 것들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을 위반했다거나 감사원 감사결과를 부정했다거나 더 나아가서 공영노조가 주장하듯이 “반대파에게 보복하려는 의도다”라는 주장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불공정 보도, 또 부당징계, 제작 자율성을 논의할 수 있는 진실소위가 있고, 또 성폭력사건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성평등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소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외주제작이나 비정규직 개선인데 앞에 2가지 소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던 군이 특별위원회까지 꾸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겠지요. 아마 KBS 경영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지적했던 그 의견에 배치되지 않은 쪽으로 특위를 운영하려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원이 2016년 감사 결과 어떤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아직 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도 하지 않았고 활동해서 문제된 사안도 아직 없는데 사전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까지 깊게 관여하는 것은 오히려 공영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에 배치될 우려도 있습니다. 당연히 김석진 위원님께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률을 위반한 것, 또 감사원 감사결과에 배치되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저희들이 확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회가 나름대로 처리하는 사안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지금 방통위가 KBS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방송법에 따르면 이사 추천권, 그다음에 정관 변경이 있을 경우 인가하는 것, 그리고 예결산 관련한 사항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사전에 금지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KBS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활동해서 어떤 사안을 정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방송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 또 부당하게 예를 들어 KBS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해서 그것이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가지 규정에 근거해서 한번 불사항이고, 지금 김석진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사회가 처리한 초기단계에서 저희들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6월 14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26분 폐회 】